

[홈페이지 공고문]

【2020학년도 2학기(2020-전기) (석/박사)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안내】

2020학년도 전기 (석/박사)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대학원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

- 가.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, 당해 학기에 해당 수료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
- 나.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
- 다.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(해당자에 한함)
- 라. **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**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(**관련규정 개정 진행중**)
- 마.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- 바. 박사과정의 경우,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(대학원학칙시행세칙 별표1 참조)에 100%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작 100%(대학원학칙시행세칙 별표1 참조)를 출판한 실적이 있는 자

< 연구실적 인정비율 >	
1) 단독연구	100%
2) 공동연구	
가) 논문지도교수와 공동연구	100%
나) 기타 2인 공동연구	70%
다) 3인 이상 공동연구	50%

사. 논문 초록발표 결과 “가” 판정을 받은 자(관련규정 개정 진행중)

아 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(관련규정 개정 진행중)

자.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재부여 승인 후 신청가능)

2.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

- 가. 석사학위과정: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
박사학위과정: 수료일로부터 10년 이내
- 나. 군 의무복무 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다.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추천과 학과교수회의나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.

3.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기간: **2020.10.26(월) - 10.30(금) 18:00**

※ 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(예정)자는 (추가)신청후 (추가)등록기간에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.

제46조의 2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내 등록생)④ 대학원 수료 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3.1.>

② 연구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(학기당 수업료의 15%)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15>

③ 연구등록생은 기숙사,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<신설 2020.3.1.>

제46조의 3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초과 등록생)④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한 자가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미응시자를 포함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는 해당학기부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등록하여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응시 포함 논문지도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20.3.1.>

② 1항의 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(학기당 수업료의 33%)를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6.15.>

③ 연구등록생은 기숙사,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

4. 제출서류

가. 석사과정

[심사신청서]

- 학위 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 1부
-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
- 심사료 납부 영수증(120,000원)

[본논문(예비심사용) 제출시]

- 학위청구논문 본논문 3부
-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[석사: 3인](논문지도교수가 제출)

[본논문(본심사용) 제출시]

-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
- 논문표절검사(문헌유사도검사)결과 확인서 1부.[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후 결과 클릭 (종합결과 다운로드 하신 후 논문지도교수 확인)]
- 학위청구논문 본논문 3부

[학위인준 논문 제출시]

- 학위인준 논문 6부 및 USB(한글파일)
-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비공개(공개) 신청서, dCollection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각1부.

나. 박사과정

[심사신청서]

- 학위 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 1부
-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
-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및 게재 논문 1부.
- 박사학위청구논문 연구실적 인정서 1부.
- 심사료 납부 영수증(300,000원)

[본논문(예비심사용) 제출시]

- 학위청구논문 본논문 5부
-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[박사:5인(3인은 내부,2인은 외부교원)](논문지도교수가 제출)

[본논문(본심사용) 제출시]

-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
- 논문표절검사(문헌유사도검사)결과 확인서 1부.[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후 결과 클릭 (종합결과 다운로드 하신 후 논문지도교수 확인)]
- 학위청구논문 본논문 5부

[학위인준 논문 제출시]

- 학위인준 논문 6부 및 USB(한글파일)
-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비공개(공개) 신청서/ dCollection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각1부.

5. 심사료 납부

가. 납부기간: 2020.10.26(월) - 10.30(금)

나. 납부계좌: 425-01-132657(농협) 금강대학교

※ 본인명의로 입금 할 것

다. 심사료: 석사과정 - 120,000원

박사과정 - 300,000원

라. 납부확인서: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시, 계좌이체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

6. 논문심사 절차

가.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

나. 외국어시험 응시(2학기 이상 등록한 자)합격

다. 전공종합시험 응시(석사-3학기 이상 등록, 18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)합격
(박사-4학기 이상 등록, 24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)합격

라. **논문 초록발표 결과 “가” 판정(관련규정 개정 진행중)**

마. 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 관련 서류 제출 및 심사료 납부

바. 본 논문(예비심사 및 본심사용) 제출 및 심사

사.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논문표절검사(문헌유사도검사) 결과 확인서 제출

아. 학위논문 최종심사 결과보고서 제출(주심)

자. 석/박사학위 인준 제본 논문 6부(대학원 교학팀 2부, 도서관 4부)와 USB(한글파일) 1개 및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비공개(공개) 신청서, dCollection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각각 제출

7.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

가.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에 의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접수하되, 자격 미달자는 접수 대상 아님.

1) 등록학기 및 취득 학점 수

- 수업연한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하며, 석사과정 2년, 박사과정 3년 이상으로 한다.(2019.4.8.일 이후적용/ 4.8일 이전: 석사과정 2년, 박사과정 2년)

[각 과정별로 6개월 이내에서 단축가능]

- 석사과정은 24학점이상,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였거나, 당해 학기에 해당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

-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

2)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(해당자에 한함)

3) **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**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(**관련규정 개정 진행중**)

4)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합격여부

5) **논문 초록발표 결과 “가” 판정을 받은 자(관련규정 개정 진행중)**

6) **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(관련규정 개정 진행중)**

7) 논문제출연한 경과여부

석사학위과정: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

박사학위과정: 수료일로부터 10년 이내

※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추천과 학과교수회의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.

8) 심사료 납부여부

나. 논문은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외국어 초록(抄錄)과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도 국문과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다. 논문심사위원(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1조)

- 제41조(심사위원)** ① 심사위원은 석사논문의 경우 3인으로, 박사논문의 경우 5인(3인은 내부, 2인은 외부교원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교원을 3인으로 할 수 있음)으로 구성하되, 대학원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 제출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②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.
 - ③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 - ④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후 교체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.
 - ⑤ 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.

라. 대학원에 제출하는 인준 제본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.

8. 문의사항: 대학원 교학팀(041-731-3133)